

광명시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이일규 의원이 추진 중인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10. 12.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5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0월 17일(수)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5,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pivarate@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의사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5

- 입법예고 목록-

○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4
○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9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 의 일 자 : 2018년 10월 12일

발 의 의 원 : 이일규, 박성민 의원

찬 성 의 원 : 이주희,한주원,이형덕 의원

1. 제안이유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예충과 그 밖의 문화예술 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임대료를 보조금으로 시에 납부하여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음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과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음을 명문화 (제4조)

3. 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5.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체육과
입안자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박성민 (2680-2536)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예충과 그 밖의 문화예술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사무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경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예충과 그 밖의 문화예술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사무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경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u>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u>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4일

발 의 자 : 이주희 의원

찬 성 자 : 박성민·현충열·김윤희·제창록·
박덕수

1. 제안이유

- 여성의 다수가 갑작스런 생리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여성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2018. 10. 13. ~ 10. 1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 임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의2(여성건강증진 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09)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2(여성건강증진 사업) ①시장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사회 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 관련법령”이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노인·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성평등”이란 누구든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 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여성친화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모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시가 여성친화적인 도시 공간을 구축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시장의 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어느 한 쪽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평등 정책

제6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9. 26>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 정책의 목표

- 가. 성평등의 촉진
-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

6. 여성친화도시 조성

- 가.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 나.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 다. 주요 정책과제
- 라. 연차별 추진계획
- 마. 추진사업 목록
- 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 사.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7. 그 밖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 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 관련사업 추진시 주민 의견 수렴

2. 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 추진 및 지원

3. 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

③ 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자료의 성별표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시와 시에서 위탁운영 또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 및 단체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와 자료에 대하여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과 예산이 남녀의 특성과 사회참여 활동, 안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 남성과 여성이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부 및 경기도 출연기관과 민간연구기관에 정책의 분석과 평가에 필요한 지원·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인지 통계를 최소 3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 시장은 예산 수립과 집행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주간행사) 시장은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하거나 공모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6, 2017. 3. 12>

[제목개정 2017. 3. 12]

제11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내부 자문기구에 남녀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직위의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직 등에의 참여 및 기회촉진)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시장은 직장 및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성차별 개선 등) 시장은 문서작성과 회의 및 근무 등 일상생활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예방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국·과·실·동장은 의무교육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성차별이나 성희롱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모성보호) 시장은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가정과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 시장은 남성과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요구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는 건강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교육 및 취업·경제활동 등에 관한 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 등) ① 시장은 직장 및 가정·학교·사회 교육에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및 인권 예방교육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가해자의 교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경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인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서 여성기업인을 배려할 수 있다.

제21조(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성평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전국단위의 단체일 경우에는 시지부 또는 지회에 한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 및 경기도 출연기관과 민간연구기관이 시의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도시기반시설) ① 시장은 도시기반시설·공공시설·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주택, 건축, 도로시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과 대중교통의 안정성 및 편의성

2.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3. 가정과 직장 양립환경조성

4.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 조성

제23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4조(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 지원체계 및 주민역량증진, 마을·가족·행정의 협력구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근거 하여 성평등을 목표로 하

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의 소속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마을단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으로 이루어진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 공동주택 등 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2.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3. 마을 단위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및 홍보
4.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포상) 시장은 성평등 정책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성평등정책위원회

제28조(성평등정책위원회) 시장은 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광명시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

3.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련된 사항
6.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7.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8.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9.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
10. 여성발전상 및 평등부부상 선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0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과장 또는 담당주사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성평등 정책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1>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3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세부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성평등기금

제38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제21조에 따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

2.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3. 성평등 실현과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0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적립 원금과 수익금 등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적립 할 수 있다.

제4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제3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 10. 10>

제43조(회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국장
2. 분임운용관: 업무담당과장
3. 지 출 원: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작 10일전까지 시의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3. 기타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제45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감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여성발전상 및 평등부부상

제47조(여성발전상 및 평등부부상) 시장은 매년 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여성발전상을, 인격적 평등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지역사회 발전과 성평등 사회를 구현한 부부에게는 평등부부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48조(시상시기) 여성발전상 및 평등부부상은 매년 여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수상대상자) ① 여성발전상 및 평등부부상 수상대상자는 시상 예정일 현재 관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관내 직장(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시민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는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0조(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기관·단체의 장이나 시민 10명 이상이 연명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51조(수상 대상자의 선정) 수상 대상자는 시장이 작성 제출한 자료에 따라 성평등 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되,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장 보칙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와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광명시 여성발전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광명시성평등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0 조례 제2300호, 존속기한 연장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0일

발 의 자 : 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조미수·김윤희·한주원·박성민·
박덕수·김연우 의원

1. 제안이유

-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 제고 및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추가 지원함으로서 입양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안 제5조 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2018. 10. 13. ~ 10. 1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소요예산 : 별첨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말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아동 1인당 월 5만 원을 추가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2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제5조(지원기준) ① (생략) <u><신설></u> <u>②</u> (생략)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u>입양아동 양육수당</u> ”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말한다.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5조(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 <u>②</u> <u>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아동 1인당 월 5만 원을 추가지급 할 수 있다.</u>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재정수반요인

- 입양아동 양육비 추가 지원에 따른 수당

나. 관련조문

- 입양특례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입양특례법 제35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 (지원기준)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체 (시비 100%)

- 지급금액 : 입양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원인원 : 85명 (2018. 8월 현재)
- 지급시기 : 2019. 1월 부터

나. 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재원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계		51				51
시비 (100%)		51				

□ 입양특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지원기준) ①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1일

발 의 자 : 현충열·박성민·이주희·조미수·
이형덕·박덕수·김윤희 의원

찬 성 자 : 한주원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을 통한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 표시뿐만 아니라 안내표지 설치를 통해 활용도 및 가시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선주차구역 설치 범위(안 제3조)
- 우선주차구역 안내 표식 규정(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2018. 10. 13. ~ 10. 1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별 첨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광명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을 통한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명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르신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광명시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우선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2.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
3.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안내표식)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의 규격과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주차차량 이동권고)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어르신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을 개·보수할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 표지

가.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 표시



나.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



= 비 고 =

1. 규 격

가. 표지판 : 70cm×60cm

나.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 2.5m×5.1m

2. 색

가. 표지판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어르신그림·기호·문자)을 사용한다.

나.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주차구획선은 노란색으로 한다.

3. 설치위치 : 표지의 설치위치는 사용자의 눈높이(150cm)와 사용자가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4.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어르신들의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주차구역을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2일

발 의 자 : 김윤호·박성민 의원

찬 성 자 : 현충열·이주희 의원

1. 제안이유

- 30년 이상 노후화된 철산3동 및 하안동 주공아파트, 일부 광명동 아파트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투명하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설치 운영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의 시행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안 제3조)
-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안 제9조)
- 리모델링 기금의 설치(안 제14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안 제1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2018. 10. 13. ~ 10. 1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리모델링 및 재건축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후 공동주택”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라 함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3. “공공지원”이라 함은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2장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3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위원은 시의원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등)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리모델링 대상단지의 사람 및 시민단체 회원
-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시장은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담당과장,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자문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제9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리모델링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하고, 지원센터장은 해당과장, 운영요원은 계약직 공무원 2명으로 한다.

제11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개발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3. 단지 특성별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 연구·개발
4.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구성 및 운영
5.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민 등 교육
6.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제12조(지역연계)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지원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13조(지원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매년 9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기금 설치

제14조(리모델링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부서의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42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 제42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2. 지원센터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3.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의 경비
4.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광명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완료 보고)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씩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과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간사와 서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씩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업무담당 주사, 서기는 기금운용관련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2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연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때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위원의 수당) 시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제25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제27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지출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주사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제5장 공공지원

제28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①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사업(이 경우 동의방법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2조제3호의 공공지원 신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을 의결하여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분소유자 명부 작성과 관련한 업무 지원
2.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 등 각종 우편물 발송과 관련한 업무 지원
3.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개최와 관련한 업무 지원 등

제29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① 시장은 공공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조합 총회에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한다.

② 시장은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조합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드는 비용
2.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제30조(공공지원의 업무범위)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및 입주민 대상의 리모델링 사업 관련 교육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3.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4.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지원

제31조(선거관리의 방법) 시장은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 4.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 ①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 2.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제17조제3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33조(공공지원의 정보공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 1. 제17조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2.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34조(자료의 제출) 조합장은 시장에게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운영일반

제35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센터 수행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한다.

제3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보칙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택과
입안자	의원 김윤희 (2680-2538)

□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4.03.20 조례 제2533호

(전문개정) 2014.10.21 조례 제2563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7.11.16 조례 제2891호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1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제2장 리모델링 지원

제1절 리모델링 기본계획

제3조(시장의 의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조직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내용)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부문별 세부작성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 나.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라. 리모델링 사업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한 사람
2.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 2명 이내

3.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
-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시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1. 16>

제7조(자문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씩을 두고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제12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① 시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장이 지도·감독한다.
- ③ 법 제42조의10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리모델링 관련 주민 설문 등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센터의 구성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센터장은 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필요한 운영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센터의 운영 직원은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제15조(리모델링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재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부서의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42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 제42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2. 지원센터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3.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연구, 조사 등의 경비
4.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안양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완료 보고)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씩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과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1. 16>
- ⑦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2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간사와 서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씩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업무담당 주사, 서기는 기금운용관련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연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심의를 할 때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위원의 수당) 시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제26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제28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국장
 - 2. 기금분임운용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과장
 - 3. 기금지출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주사
-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장 보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10. 21 조례 제256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91호, 안양시양성평등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활성화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 「안양시 성평등 기본조례」 ” 를 “ 「안양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 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 를 “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로 한다.

② 부터 ⑬ 까지 생략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6.28 조례 제2707호
(일부개정) 2014.01.10 조례 제2776호
(일부개정) 2015.06.01 조례 제2889호
(일부개정) 2017.08.14 조례 제310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8.14.>
2. “리모델링”이라 함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8.14.>
3. “공공지원”이라 함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 2014.01.10><일부개정 2017.8.14.>

제2장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3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일부개정 2017.8.14.>

제4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위원은 시의원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등)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7.8.14.>

1.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일부개정 2017.8.14.>
2.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7.8.14.>
3.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7.8.14.>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17.8.14.>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8.14.>

⑤ 시장은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7.8.14.>

제6조 (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일부개정 2017.8.14.>

제7조(간사 및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담당과장,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8.14.>

제8조(수당 등) 자문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8.14.>

제3장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제9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리모델링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하고, 지원센터장은 해당과장, 운영요원은 계약직 공무원 2명으로 한다.

제11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개발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3. 단지 특성별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 연구·개발
4.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제12조(지역연계)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지원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13조(지원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8.14.>

② 센터장은 매년 9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8.14.>

제4장 기금 설치

제14조(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공공지원 <본장 신설 2014.01.10>

제15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본조 신설 2014.01.10>

①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일부개정 2017.8.14.>

1. 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사업(이 경우 동의방법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후단개정 2015.06.01>
2.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2조제3호의 공공지원 신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을 의결하여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8.14.>
 1. 구분소유자 명부 작성과 관련한 업무 지원
 2.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 등 각종 우편물 발송과 관련한 업무 지원
 3.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개최와 관련한 업무 지원 등

제16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본조 신설 2014.01.10>

- ① 시장은 공공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조합 총회에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한다.
- ② 시장은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7.8.14.>
 - 1. 조합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드는 비용<일부개정 2017.8.14.>
 - 2.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본조개정 2017.8.14.>

제17조(공공지원의 업무범위) <본조 신설 2014.01.10>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본조개정 2017.8.14.>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3.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 4.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지원
- 5. 그 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지원<일부개정 2017.8.14.>

제18조(선거관리의 방법) <본조 신설 2014.01.10> 시장은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1.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 2.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3.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 4.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7.8.14.>

제19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본조 신설 2014.01.10>

- ①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 2.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제17조제3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일부개정 2017.8.14.>

제20조(공공지원의 정보공개) <본조 신설 2014.01.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8.14.>

- 1. 제17조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2.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자료의 제출) <본조 신설 2014.01.10> 조합장은 시장에게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운영일반 <제5장에서 이동 2014.01.10>

제22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센터 수행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14.01.10><일부개정 2017.8.14.>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14.01.10><일부개정 2017.8.14.>

부칙 <제정 2013.06.28 성남시 조례 제2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1.10 성남시 조례 제2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6.01 성남시 조례 제2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8.14. 조례 제31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새로이 구성되는 자문단에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2.26 조례 제116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리모델링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 ①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관과장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맞춤형 리모델링 상담 및 자문
5.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연구·분석

제5조(지역연계) 구청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지원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6조(지원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5.02.26,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